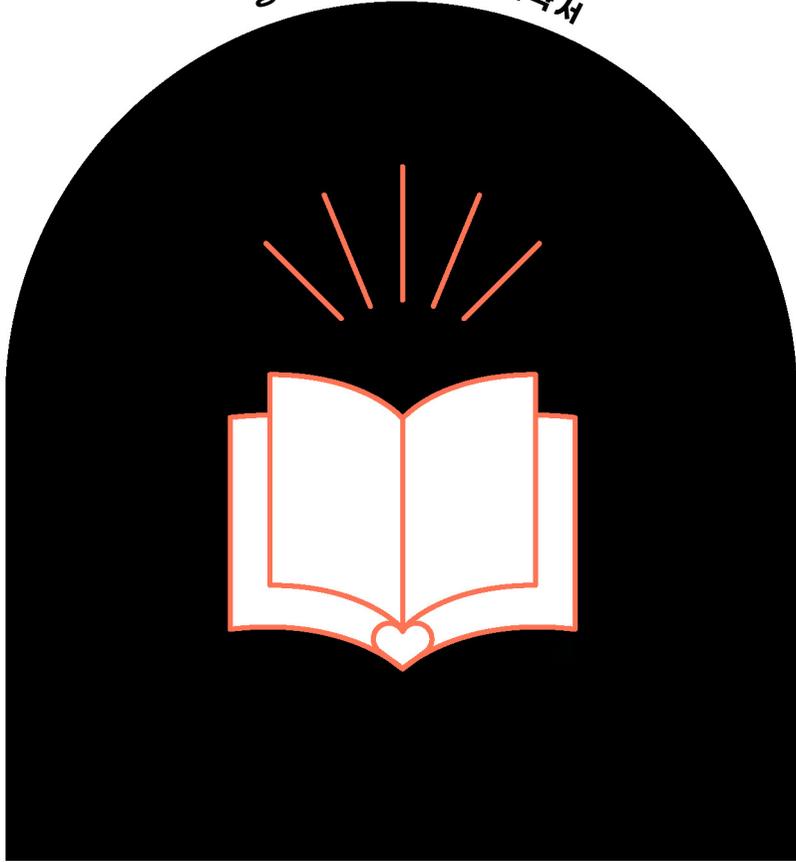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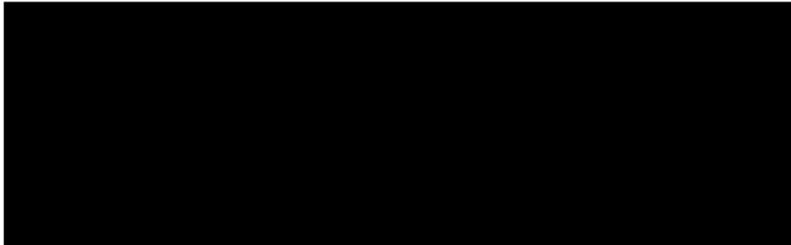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목차



01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도입의 필요성 및 작성 방향



02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03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해설

이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도입의 필요성 및 작성 방향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도입의 필요성

2000년 이후 공연장 수가 급증하고 2010년 이후 뮤지컬의 산업화 등으로 공연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장르별 특성화를 표방한 장기 대관 공연장이 늘어나면서 공연장 대관은 제작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연장 대관은 제작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연장 대관은 일반적으로 공고, 대관신청, 심사, 승인통보, 계약의 절차로 진행되며 사용자의 의무를 포괄하는 규약을 기반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지금까지의 공연장 대관 규약은 공연장의 안전과 효과적인 공연장 운영 등을 고려하여 공연장에서 정하는 것으로, 표준대관계약서는 공연장 중심으로 서술된 측면이 있다. 공연장 대관의 한 당사자인 사용자는 계약의 내용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협의할 여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랜 기간 공연장 중심으로 수립되어 온 대관규약과 계약서가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오다 보니 공연시장의 급속한 환경변화나 코로나 바이러스 등과 같은 새로운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 간 입장 차이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공연계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불합리한 관행을 재정비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표준 계약서를 개발, 보급하여 공연계의 건강한 시장 구성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계약의 당사자들이 본 표준계약서에 제시된 사항들을 토대로 개별 계약의 성격에 맞게 약정 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율하고 협의하여 계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공연장 대관에 관해 처음 개발되는 표준계약서이므로 틀을 갖추는 데 의미를 두었다. 향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현장의 실태가 반영되면서도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지침 역할을 기대한다.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작성 방향

위와 같은 도입취지를 반영하여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였다.

1. 종전의 공연장 대관계약에서는 대관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과 대관 계약의 목적물을 모두 ‘공연장’으로 기재하여 그 의미에 혼란이 있었던바, 본 계약서에서 계약의 당사자는 ‘공연장 운영자’로, 계약의 목적물은 ‘공연장’으로 서로 다른 용어로 칭하였다.
2. 종전의 공연장 대관계약에서는 공연장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승인’, ‘허가’, ‘허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는 그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상 공연장 대관 계약 당사자 간 수직적, 위계적 지위를 암시하고 있었다. 이에 본 계약서에는 위 단어들을 ‘협의’ 내지 ‘합의’로 개선하여, 동등한 지위의 계약 당사자임을 강조하고자 노력하였다.
3. 계약금 및 잔금의 요율 및 지급 일정에 관하여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연장의 규모, 공연장 대관의 기간, 정기대관인지 수시대관인지 여부’ 등에 따라 적절한 계약금의 요율은 상이할 수밖에 없어 보여, 논의 끝에 구체적 계약금 및 잔금의 요율은 본 계약서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본 계약서의 해설서에서는 ‘계약금 요율과 관련한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의 서로 다른 관점, 대관계약에서도 유상 계약의 통상적인 계약금 요율로 계약금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 최근 예술의 전당 및 세종문화회관의 계약금 요율 조정 사례’들을 소개하여, 당사자 간 협의로 사용자와 공연장 운영자의 사정에 맞는 적합한 계약금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계약금의 법적 의미’와 더불어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기능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4. 공연준비 및 공연진행 과정에서 상호 협조할 의무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공연장 내부 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켜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양 당사자의 의무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5. 202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대관 취소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하여, 공연장 운영자 및 사용자 측 모두 ‘감염병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보다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의견을 수용하여, 본 계약서에서는 대관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행정청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지침 등으로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운영 중단이나 폐쇄 등을 명한 경우’를 추가하였다.
6. 종전의 공연장 대관계약에서는 공연장 운영자의 의무는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본 계약서에서는 공연장 운영자가 사용자의 공연 상연에 필요한 정도의 공연장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기재하였고, 이로써 사용자가 공연장 운영자 측에 공연장의 시설 및 상태와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또한 공연장 운영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것들을 초과하여 사용자 측에 부당한 의무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7. 본 계약서에서는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소송’ 외에 ‘중재’의 방법도 있음을 소개하였고, 만약 당사자 간 본건 계약서에서 분쟁의 해결 방법을 ‘중재’로 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중재합의’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다.
8. 종전의 공연장 대관계약에서는 대관 관련 사항 중 대부분을 공연장의 내부 규약으로 정하고 있었고, 공연장 내부 규약은 공연장 대관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는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로 대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계약서에서는 공연장 내부 규약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 중 중요한 부분은 ‘계약’의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계약의 내용이 공연장 내부 규약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밝혔다.

02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_____ (이하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_____ (이하 '사용자')는 20___.
___. ___. [공연장 명칭] (이하 '공연장')의 대관에 관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사용자가 '___' 공연을 위하여 공연장 운영자로부터 공연장을 대관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대관이란 공연의 상연·연습·녹음·녹화 및 이와 관련한 부수 행위 등을 위하여 공연장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공연장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공연준비대관, 철수대관, 연습실대관 및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
 1. 정기대관은 연 단위, 반기 단위, 분기 단위 등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이루어질 공연에 대하여 대관신청을 하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관을 의미한다.
 2.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외에 당해 위 1호 기재 기간 중 대관이 가능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관을 의미한다.
 3. 공연대관은 공연기간 중 관객이 공연관람을 위하여 공연장에 입장한 상태에서 공연이 상연되는 경우를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공연준비대관은 공연대관 이전에 무대세트 및 장치 설치, 리허설 등 공연의 준비를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철수대관은 최종회차 공연을 종료한 이후 무대세트, 조명, 음향, 촬영 장비 등의 철수를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연습실대관은 공연준비에 추가로 필요한 연습을 위하여 공연장 내 위치한 연습실 등 연습에 필요한 공간을 대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7. 기타대관이란 공연 이외에 방송, 영화, 녹화, 뮤직비디오, CF 및 영상 제작,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계약 내용)

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연명	000 000	
대관 목적물(시설명/범위)		
대관 목적		
공연 장르		
대관 기간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	
	공연준비대관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
	공연대관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
	철수대관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
	기타대관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
대관 사용 시간		
	공연대관	오전/오후 __ : __ ~ 오전/오후 __ : __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	오전/오후 __ : __ ~ 오전/오후 __ : __

제4조(대관료 지급 등)

① 대관료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회차/일수/기간	금액
기본대관료		
	공연준비대관	
	공연대관	
	철수대관	
	그 외	
부대설비사용료		
	부대설비 항목 1	
	부대설비 항목 2	
총액		

② 대관료의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다.

	금액	지급시기	비고
기본대관료 계약금			
기본대관료 잔금			
부대설비사용료			

- ③ 본 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가 공연장의 부대설비사용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부대설비 이용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의 지급시기는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④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대관을 할 수 있으며 추가 대관에 따른 대관료의 산정 방법과 지급 시기는 위 1항 및 2항을 기준으로 별도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공연내용 및 일정의 임의변경 금지)

- ①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정한 공연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②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 제3조에 정한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
- ③ 사용자가 공연준비 시작일 전에 대관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공연장 운영자에게 약정 대관료의 [*]%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가 공연준비 기간이 시작된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대관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공연장 운영자에게 약정 대관료의 [*]%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① 사용자는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설치할 경우 공연장 운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대관 기간 만료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변경된 시설 등의 원상복구, 반입·설치한 설비의 철거·폐기 의무를 부담하며, 사용자가 공연장 운영자가 기한을 정한 철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철거·폐기 등을 지연할 경우 공연장 운영자는 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직접 철거 및 폐기한 후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공연장 운영자의 의무)

- ① 공연장 운영자는 본 계약상 대관 기간 중 사용 시간 동안 공연장을 사용자에게 개방하고 사용자가 본 계약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공연장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제8조(사용자의 관리의무)

- ① 사용자는 본 계약상 대관 기간 중 사용 시간 동안 본 계약의 목적물인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대관 기간 중 공연장 내에서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고 적절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과 관련하여 안전, 사고, 환경 등에 관한 교육 등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무대장치나 장치물 등 외부에서 반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방염 및 전기안전검사 등 각종 안전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공연장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상 지위의 이전 등 금지)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계약자의 지위나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선택 | 제10조(공연준비협조)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는 공연 준비 중 아래 선택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의무가 있다(로 선택사항 표시).

- 사용자는 무대작업 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하우스 진행, 부대시설사용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연준비기간 시작일 [*]일 전까지 공연장 운영자의 주관 하에 공연장의 무대 스태프와 스태프 회의를 한다(단, 공연장 건축물을 이용한 장치의 설치 및 고하중 특수장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제작 단계에서 사전에 공연장 무대기술 스태프들과 안전 및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공연장식 및 소품 등으로 화기를 이용한 특수효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체효과기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화기를 사용할 경우 스태프 회의에서 화기사용 계획 및 화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공연장 운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사용자는 무대장치의 디자인 및 설치 시 공연장의 소방시설물이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는 공연장 로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공연장에서의 판촉 및 사인회 등의 행사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외부 카메라를 객석에 반입하여 별도의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된 촬영 위치와 사용 카메라 수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촬영 장비는 공연 시작 [*]시간 전까지 반입 완료되어야 하고, 장비의 철수는 관객 퇴장 완료 후 가능하며 객석 내 관객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마감한다.

선택 | 제11조(공연진행협조)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는 공연 진행 중 아래 선택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의무가 있다(√로 선택사항 표시).

- 사용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 ‘무대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의 기술 검토 후 공연장 기술진의 감독 하에 작업한다.
-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화재, 무대붕괴, 공연출연자, 무대시설 등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사태 발생하여 공연진행이 어려운 경우 공연장 운영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연시작의 지연 또는 공연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용자는 공연진행을 위한 로비 및 객석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공연시작 [*]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시까지 공연진행과 관련된 공연장 운영(객석, 로비, 공연진행, 안전관리, 관람객 편의 등)은 [공연장 운영자/사용자](선택)가 총괄한다.
-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로비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연장 운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
 - 사인회 / 리셉션 / 설문조사 / 음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기타 별도의 행사 / 공연 전·후 포함 로비 촬영

선택 | 제12조(제작 및 투자)

- ① 공연장 운영자는 본 계약에 의한 대관공연에 관하여 공동제작, 공동주최 또는 기획대관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공연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변경 시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가 별도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본 계약 체결 후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제작, 투자 및 예상 손익 관련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제작 또는 투자 관련 협의를 진행되도록 한다.

선택 | 제13조(입장권 발권)

대관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공연장 운영자가 정한 양식에 따라 사용자가 발권한다. 이때 사용자는 정해진 좌석수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권할 수 없다.

선택 | 제14조(입장권 매표 및 수표 관리)

입장권 매표는 사용자가, 입장권 수표의 관리는 공연장 운영자가 각각 책임지고 전담한다.

선택 | 제15조(입장권 판매)

- ① 공연장 운영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공연장 운영자가 보유(지정)하는 입장권판매시스템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와의 사전 합의에 따라 입장권판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다.
- ② 공연장 운영자 또는 사용자가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에 따른 판매 방식, 시스템 연동,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장권 판매대행사와 별도 합의된 바에 따른다.

제16조(공연의 취소 또는 중지)

- ①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사용자는 우선 사용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등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절차를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2. 행정청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지침 등으로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운영 중단이나 폐쇄 등을 명한 경우
 3. 공연장 운영자 및 사용자와 관계없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4. 공연장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 공연장 관리 책임 소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사유 외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

- ② 제1항의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 또는 중지 시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사이의 대관료 반환 등에 관하여는 그 사유별로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 ① 공연장 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위반사항 시정 또는 계약이행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러한 서면 통보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시점으로부터 [*]일이 경과하여도 시정 또는 계약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대관 승인 후 사용자의 대관 신청 시 기재 사실 중 중요 부분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사용자가 본 계약에 정한 공연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사용자가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장 운영자에게 위반 사항 시정 또는 계약이행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러한 서면 통보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시점으로부터 [*]일이 경과하여도 시정 또는 계약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연장 운영자가 본 계약에 정한 공연장 개방 의무 및 사용자가 공연을 상연하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공연이 불가능한 경우
 2. 기타 공연장 운영자가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제18조(대관료의 반환 등)

사용자가 공연장 운영자에게 이미 지급한 대관료는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자는 그 정한 바에 따라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행정청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지침 등으로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운영 중단이나 폐쇄 등을 명한 경우
3. 행정청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지침 등으로 거리두기 제한 등을 두어 공연장의 객석 일부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공연장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 공연장 관리 책임 소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연준비대관일로부터 [*]일 전에 본 계약을 상호 합의해제한 경우
6.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5호의 기준일 이후에 본 계약을 상호 합의해제한 경우

제19조(손해배상)

- ① 공연장 운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배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에 정한 대관료 지급 및 대관료 반환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의 변경)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는 본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분쟁해결 등)

-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중 _____ 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_____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본 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 시로부터 발생한다.
- ② 본 계약은 공연장 운영자의 내부 규약에 우선한다.
- ③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 ④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03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해설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해설

_____ (이하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_____ (이하 ‘사용자’)는 20〇〇. 〇〇. 〇〇. [공연장 명칭] (이하 ‘공연장’)의 대관에 관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공연장 대관계약이란 공연장을 대관하여 공연을 하고자 하는 공연단체, 공연기획사, 공연제작자 등이 공연장을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주체와 사이에 공연장대관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모든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 원칙에 기초하여 양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그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표준계약서도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변형·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공연장 대관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개별 당사자들은 해당 공연장의 규모 및 개별 공연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변형·수정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표준계약서에서 기재의 편의를 위해 통상의 유상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계약금, 위약금 등)을 차용한 경우가 있으나, 공연장 대관계약의 특수함¹⁾으로 인하여 그 단어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다른 통상의 유상계약에서 내포하는 의미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표준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본 표준계약서 또는 특약으로 그 의미를 상술함으로써 본 표준계약서로 정한 약정의 의미와 효과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1) 공연장 대관의 경우, 대관 기간이 시작되기 전 공연 자체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공연의 기획 및 제작 기간은 대관 기간에 비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관 일정 시작 전에 사용자가 대관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공연장 운영자는 다른 계약 당사자를 물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연장 대관 계약의 경우,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는 공연장을 대관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공연에 대한 홍보, 티켓 판매 사무 등과 관련된 여타의 의무들도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연장 대관 계약에서 ‘계약금’이라는 이름의 금전을 수수하더라도 계약금의 해약금적 성격을 당연히 예정한 것은 아닐 수도 있고, ‘잔금’이라는 이름으로 금전을 수수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서와 같이 목적물(공연장)의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아니할 수도 있다.

종전에는 공연장을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일방 당사자를 ‘공연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연장을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와 대관계약의 목적물인 공간적·물리적 의미로서의 ‘공연장’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공연장을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일방 당사자를 ‘공연장 운영자’라 칭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공연장을 대관하여 공연을 하는 공연단체, 공연기획사, 공연제작자 등을 ‘대관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호칭만으로는 공연장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주체라는 의미로 파악하기가 다소 어려워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사용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본 표준계약서에서의 사용자란 대체로 공연장 운영자 등이 내부 규약으로 정하여 둔 대관신청 및 대관심의 과정을 거쳐 대관승인을 받는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대관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대관 승인까지 받아서 대관 계약의 당사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은 단계 이후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사용자가 ‘○○○’ 공연을 위하여 공연장 운영자로부터 공연장을 대관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본 표준계약서는 주로 ‘공연’을 위하여 공연장을 대관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따라서 ‘전시’를 목적으로 한 대관의 경우에 본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소 부적합할 수 있다. 다만, 공연 장르의 다양화, 복합화로 인하여 공연과 전시가 함께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공연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사이에 상호 협의를 통한 합의로써 본 표준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를 취사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연법상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공연법 제2조 제1호)’을 의미한다. 다만, 공연법상 공연의 정의에 포섭되지 않는 종류의 공연이라 하더라도 본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여 공연장 대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수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대관이란 공연의 상연·연습·녹음·녹화 및 이와 관련한 부수행위 등을 위하여 공연장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공연장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공연준비대관, 철수대관, 연습실대관 및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
 1. 정기대관은 연 단위, 반기 단위, 분기 단위 등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이루어질 공연에 대하여 대관신청을 하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관을 의미한다.
 2.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외에 당해 위 1호 기재 기간 중 대관이 가능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관을 의미한다.
 3. 공연대관은 공연기간 중 관객이 공연관람을 위하여 공연장에 입장한 상태에서 공연이 상연되는 경우를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공연준비대관은 공연대관 이전에 무대세트 및 장치 설치, 리허설 등 공연의 준비를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철수대관은 최종회차 공연을 종료한 이후 무대세트, 조명, 음향, 촬영 장비 등의 철수를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연습실대관은 공연준비에 추가로 필요한 연습을 위하여 공연장 내 위치한 연습실 등 연습에 필요한 공간을 대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7. 기타대관이란 공연 이외에 방송, 영화, 녹화, 뮤직비디오, CF 및 영상 제작,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연장 대관이 정기대관인지 수시대관인지는 대관 신청 단계에서 정해지게 된다. 공연장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상, 하반기 내지 1/4분기로 나누어 차기의 공연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다.

공연장 대관계약의 경우 사용 목적에 따라 공연장 대관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연장 별로 사용 목적에 따른 대관 분류의 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본 표준 계약서에서는 사용 목적에 따른 대관의 유형을 통일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필수

제3조(계약 내용) 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연명	000 000	
대관 목적물(시설명/범위)		
대관 목적		
공연 장르		
대관 기간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	
	공연준비대관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
	공연대관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
	철수대관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
	기타대관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
대관 사용 시간		
	공연대관	오전/오후 __ : __ ~ 오전/오후 __ : __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	오전/오후 __ : __ ~ 오전/오후 __ : __

● 공연명

공연장 대관계약에서 대상 공연을 특정하기 위하여는 공연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연장 대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로 공연을 기획, 제작하는 과정에서 공연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시 공연명 옆에 ‘가칭, 가제’임을 표시하여 공연명이 변경 가능함을 명시해 둘 수 있다.

공연 이외의 행사 등을 위한 대관의 경우라면 해당 행사명을 기재할 수 있다.

● 대관 목적물

공연장 대관계약에는 대관의 목적물인 공연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공연장의 소재지를 특정하고 대관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공연장 운영자가 여러 개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용자가 그 중 일부만을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확히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연장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구분하여 그 사용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이 각기 의미하는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다면 이 또한 기재하는 것이 좋다.

●
대관 목적

공연장 대관계약을 체결하여 공연장을 대관하고자 하는 간략한 이유를 기재할 수 있다. 공연 상연, 행사 진행, 영상 제작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
공연 장르

장르에 따라 대관료 등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연극, 뮤지컬, 오페라, 무용 등 해당 공연의 장르를 기입하도록 한다.

●
대관 기간

공연장 대관을 하는 전체 기간을 기입함은 물론, 공연준비대관, 공연대관, 철수대관 등 대관의 분류에 따른 각 대관마다 약정한 기간도 기입하도록 한다.

●
대관 사용 시간

통상적으로 공연장 대관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약정된 대관 기간의 전(全) 기간 동안 공연장을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대관 기간 중 사용 목적에 따라 약정한 사용 시간에 한하여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다.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는 사전에 공연장 대관계약에 사용 시간을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필수

제4조(대관료 지급 등)

① 대관료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회차 / 일수 / 기간	금액
기본대관료			
	공연준비대관		
	공연대관		
	철수대관		
	그 외		
부대설비사용료			
	부대설비 항목 1		
	부대설비 항목 2		
총액			

② 대관료의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다.

	금액	지급시기	비고
기본대관료 계약금			
기본대관료 잔금			
부대설비사용료			

③ 본 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가 공연장의 부대설비사용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부대설비 이용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의 지급 시기는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대관을 할 수 있으며 추가 대관에 따른 대관료의 산정 방법과 지급 시기는 위 1항 및 2항을 기준으로 별도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대관료에는 기본대관료와 부대설비사용료가 있다. 또한 기본 대관료의 경우에도 앞서 제2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 목적에 따라 대관료의 단가 내지 요율이 달리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각 사용 목적에 따른 대관의 회차 내지 대관 별로 대관하는 회차, 일수, 기간 등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한다.

부대설비사용료는 부대설비항목을 기재한 후 금액을 산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한다. 다만, 부대설비의 경우 공연을 진행함에 따라 추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연장 대관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가 추가적인 부대설비 사용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부대설비 이용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이에 따른 비용은 대관 기간이 종료된 이후 일괄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도 있고, 사용 신청할 때마다 정산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도 있다.

계약금이란 계약 체결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이 지급되면 해제권을 유보하는 작용을 하는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민법 제565조 제1항, 제567조).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사용자는 납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공연장 운영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공연장 대관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금의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공연장 대관계약의 당사자는 아래 기재된 조항의 문구를 삽입하여 계약금의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배제할 수 있다.

선택

본 계약에서 사용자가 납부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에게는 ‘해제권’이 필요한데, ‘해제권’은 당사자 간 약정을 통해 정할 수도 있고(약정 해제권), 법률(민법)상 해제권의 사유로 규정된 사실이 일어남에 따라 발생(법정 해제권)하기도 한다.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의미는, 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인해 계약의 양 당사자 모두 ‘해제할 수 있는 권리(해제권)’를 보류한다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가 어느 일방의 이행 착수 전까지 계약금 상당 금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 해제 사유는 필요치 않다. 하지만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면, 당사자 중 일방은 계약금만큼의 금액만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없고, 별도의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연장 대관의 경우 통상의 임대차 계약과 달리 갑작스런 해약시 공연장 운영자의 입장에서 단기간 내에 다른 사용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고, 사용자의 입장에서조차 준비했던 일정에 맞는 공연장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원하는 측이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더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선택

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를 제한함으로써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는 계약금의 배액의 상환 또는 계약금의 포기로서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종전의 공연장 대관계약의 경우 계약금은 통상적인 유상 계약의 계약금 요율을 상회하는 경우가 있었다. 사용자가 공연장 대관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공연장 운영자는 그 해제된 공연장 대관계약 상의 대관 기간에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용자를 물색하여 공연장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공연의 특성상 이것이 쉽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공연장 운영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공연장 대관계약의 구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약금의 요율을 높게 책정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연장 대관계약도 통상적인 유상 계약에서의 계약금 요율 수준으로 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공연장에 대하여 ‘계약금은 전체 대관료의 15%-20% 정도로 정하되, 사용자는 대관일정이 시작되기 270일 이전까지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대관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대관일정이 시작되기까지 기간이 270일 미만인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외에도 위약금 내지 실제 손해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적절한 계약금의 요율은 공연장의 규모, 대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금의 요율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모든 유상의 쌍무계약²⁾에서 잔금의 지급과 계약 목적물의 인도 내지 반대급부의 이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계약상 목적물을 인도받는 것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잔금의 지급이 선이행 의무로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연장 대관계약의 경우, 공연장 대관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부터 특정 공연이 해당 공연장에서 상연될 것임을 홍보하고 더불어 공연장 운영자도 공연장 대관에 부수하는 사무에 착수하기 때문에 잔금 지급 시기를 공연장 대관 시작 시기 이전으로 정해두더라도 이에 관하여 잔금 지급의무가 공연장 대관 의무에 대하여 ‘선이행 의무’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참고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판매 개시 시점’을 잔금납부일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부대설비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하기로 합의된 설비에 한하여 책정하되 기본대관료와 별도로 정한다.

기본대관료의 잔금, 부대설비사용료의 지급 시기는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계약의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공연장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대관료의 지급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의 문구는 아래와 같이 기재할 수 있다.

선택

공연장 운영자는 사용자의 대관료 지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체결한 증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상대방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공연장 대관계약에서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장을 사용자에게 개방하고 사용자가 본 계약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대관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편무계약은 증여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이다.

공연장 운영자는 대관료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연장 운영자의 입장권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된 입장권 판매대금에서 미지급 대관료 상당을 공제한 후 사용자에게 정산하도록 정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공연의 입장권판매를 공연장 운영자의 입장권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하고 위와 같은 대관료와 판매대금 정산 방식을 거치기로 계약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이며, 이때 계약서의 문구는 아래와 같이 기재할 수 있다.

선택

사용자가 대관료를 미지급하는 경우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장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된 입장권판매대금에서 미지급 대관료 상당을 공제한 후 사용자에게 정산할 수 있다.

기존의 공연장 대관계약의 경우, 공연장 운영자가 대관료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입장권 판매대행을 위탁한 타 입장권 판매대행사에 대하여 입장권판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예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사용자의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으며 가압류 등 적법한 채권회수절차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대관료 지급 내지 결제 방식은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공연장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통상의 대금 결제 방식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편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는 사전 협의를 거친 합의에 의하여 기본적인 대관 사용 시간 내지 대관 기간을 초과하여 대관할 수 있다. 기본적인 대관 사용 시간이나 대관 기간을 초과하여 대관한 부분에 대한 대관료를 기본 대관료와 동일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 대관료와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정할 것인지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위와 같은 사전 협의 없이 당초 약정한 공연장 사용 시간과 대관 기간을 초과하여 공연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자가 약정 공연장 사용 시간과 대관 기간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공연장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초과 대관 부분에 관하여서는 할증된 추가 대관료를 부담하는 것을 약정해 둘 수도 있다. 이러한 할증 추가 대관료의 약정은 공연장 운영자는 사전 협의되지 않은 초과 대관으로 인해 공연장 운영자가 부담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필수

제5조(공연내용 및 일정의 임의변경 금지)

- ①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정한 공연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②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 제3조에 정한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
- ③ 사용자가 공연준비 시작일 전에 대관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공연장 운영자에게 약정 대관료의 [*]%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가 공연준비 기간이 시작된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대관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공연장 운영자에게 약정 대관료의 [*]%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은 사용자가 공연장 운영자와 합의한 대관의 목적 및 공연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조항이며, 이는 양 당사자 간 합의한 공연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때 공연 내용에는 공연의 출연자 및 공연의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다.

제2항의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으로 정한 공연장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없으나 공연장 운영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에 의한 대관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일정 변경 시기에 따라 아래 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대관료 부담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다.

제3항은 사용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개시하기 전 공연 일정을 단축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제4항은 사용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 시작 이후 공연 일정을 단축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공연장 운영자는 사용자와의 공연장 대관계약 체결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용자와 계약할 기회를 상실하였을 수 있다. 이에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는 합의된 공연 일정의 변경 시점에 따라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기존의 대관료 중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을 참고하여 계약의 양 당사자는 공연장의 규모 및 공연의 기간, 공연 단축을 결정한 구체적 시점에 따라 대관료의 부담에 관한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필수

제6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① 사용자는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설치할 경우 공연장 운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대관 기간 만료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변경된 시설 등의 원상복구, 반입·설치한 설비의 철거·폐기 의무를 부담하며, 사용자가 공연장 운영자가 기한을 정한 철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철거·폐기 등을 지연할 경우 공연장 운영자는 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직접 철거 및 폐기한 후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은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대관계약의 목적물인 공연장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공연을 위하여 공연장에 반입·설치하는 설비들에 관하여 확인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어 두게 된 규정이다.

디스플레이, 음향장치 등의 기술 설비를 이용한 공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창작 및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공연장 운영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용자가 공연을 위한 설비를 반입·설치하는 것을 금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제2항은 사용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연장 운영자가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라 자력구제 및 사후 비용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연장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필수

제7조(공연장 운영자의 의무)

- ① 공연장 운영자는 본 계약상 대관 기간 중 사용 시간 동안 공연장을 사용자에게 개방하고 사용자가 본 계약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공연장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공연장 운영자는 대관기간 중 사용 시간 동안, 공연장을 사용자에게 개방하고 사용자가

공연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과거 공연장 대관계약에서는 공연장 운영자의 의무 내용을 명시하여 규정하지 않은 예들이 있어 본 표준계약서에서 이를 규정하였다.

공연장 운영자의 이 의무는 공연장 대관계약의 목적 및 취지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내용으로서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장 대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담하는 주된 의무이기도 하다.

공연장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요구의 예시이다. 공연장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공연장 대관계약 체결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나고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여하한 형태의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장 대관계약의 체결을 이유로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규정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 계약에 정한 내용 외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양 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규정이 공연장 운영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허용됨을 시사하는 것도 아니다.

필수

제8조(사용자의 관리의무)

- ① 사용자는 본 계약상 대관 기간 중 사용 시간 동안 본 계약의 목적물인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대관 기간 중 공연장 내에서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고 적절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과 관련하여 안전, 사고, 환경 등에 관한 교육 등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무대장치나 장치물 등 외부에서 반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방염 및 전기안전검사 등 각종 안전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공연장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공연장을 사용하는 실제 기간, 즉 대관 기간 중 사용 시간 동안 사용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란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로서, 일반적·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공연장 내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방지책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였고, 사용자에게 그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공연장 운영자가 실시하는 교육에 사용자가 적극 참여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제4항에서는 공연장 운영자는 사용자가 외부에서 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 방염 및 전기안전검사 등 각종 안전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하게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였다.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위와 같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는 합의하는 바에 따라 공연에 참가하는 스태프와 출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을 계약 내용으로 넣을 수 있다.

필수

제9조(계약상 지위의 이전 등 금지)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계약자의 지위나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없다. 특정 공연을 특정 공연장에서 상연하는 공연장 대관계약의 특성상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당초 체결한 계약의 취지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 이전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을 밝혔다.

선택

제10조(공연준비협조)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는 공연 준비 중 아래 선택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의무가 있다(☑로 선택사항 표시).

- 사용자는 무대작업 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하우스 진행, 부대시설사용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연준비기간 시작일 [*]일 전까지 공연장 운영자의 주관 하에 공연장의 무대 스태프와 스태프 회의를 한다(단, 공연장 건축물을 이용한 장치의 설치 및 고하중 특수장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제작 단계에서 사전에 공연장 무대기술 스태프들과 안전 및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공연장식 및 소품 등으로 화기를 이용한 특수효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체효과기 사용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화기를 사용할 경우 스태프 회의에서 화기사용 계획 및 화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공연장 운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사용자는 무대장치의 디자인 및 설치 시 공연장의 소방시설물이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는 공연장 로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공연장에서의 판촉 및 사인회 등의 행사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외부 카메라를 객석에 반입하여 별도의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된 촬영 위치와 사용 카메라 수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촬영 장비는 공연 시작 [*]시간 전까지 반입 완료되어야 하고, 장비의 철수는 관객 퇴장 완료 후 가능하며 객석 내 관객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마감한다.

기존에는 공연준비협조와 관련된 사항은 공연장 내부 규약에서 미리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를 공연장 대관계약의 내용으로 삽입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당사자 간 합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기재 사항 외에도 공연장 대관계약의 당사자들은 공연장 홈페이지 및 공연장 외벽의 대관 홍보 등 공연 홍보와 광고 관련 사항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선택

제11조(공연진행협조)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는 공연 진행 중 아래 선택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의무가 있다(☑ 로 선택사항 표시).

- 사용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무대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공연장 기술진의 감독 하에 작업한다.
-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화재, 무대붕괴, 공연출연자, 무대시설 등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사태 발생하여 공연진행이 어려운 경우 공연장 운영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연시작의 지연 또는 공연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용자는 공연진행을 위한 로비 및 객석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공연시작 [*]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시까지 공연진행과 관련된 공연장 운영(객석, 로비, 공연진행, 안전관리, 관람객 편의 등)은 [공연장 운영자/사용자](선택)가 총괄한다.
-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로비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연장 운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
 - 사인회 / 리셉션 / 설문조사 / 음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기타 별도의 행사 / 공연 전·후 포함 로비 촬영

기존에는 공연진행협조와 관련된 사항도 공연장 내부 규약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해당 부분을 공연장 대관 계약 사항으로 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당사자 간 합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에 기재한 사항 외에도 ① 공연 진행 내지 공연 당일 발생한 민원 사항에 대한 대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연 진행 중 공연장 내부 출입에 관한 사항, ③ 사인회, 리셉션, 기타 로비 부대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 ④ 포토존, 판촉홍보부스 등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로비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타 공연장 관람객에 대한 불편 초래 방지에 필요한 사항 등 공연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사이에 미리 협의하여 합의한 사항을 규정해 놓을 수 있다.

선택

제12조(제작 및 투자)

- ① 공연장 운영자는 본 계약에 의한 대관공연에 관하여 공동제작, 공동주최 또는 기획대관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공연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변경 시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가 별도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본 계약 체결 후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제작, 투자 및 예상 손익 관련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제작 또는 투자 관련 협의를 진행되도록 한다.

공연장 대관계약 체결 시 공연장 운영자가 사용자가 제작하는 공연에 공동 제작 및 투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에는 별도의 제작 및 투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조항은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의 제작 및 투자에 참여할 경우에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선택

제13조(입장권 발권)

대관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공연장 운영자가 정한 양식에 따라 사용자가 발권한다. 이때 사용자는 정해진 좌석수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권할 수 없다.

입장권 발권의 권한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입장권은 공연장 운영자가 정한 양식을 따라야 함을 밝혔다.

자동발권시스템을 사용하는 공연장의 경우 정해진 좌석 수를 초과하여 티켓을 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나, 자율석인 공연장(지정석이 아닌 공연장을 의미한다) 또는 입식 공연장의 경우 정해진 좌석 수를 초과하여 초대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좌석수를 초과하여 티켓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관한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장 이용 가능 객석 수를 초과하는 관객의 입장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선택

제14조(입장권 매표 및 수표 관리)

입장권 매표는 사용자가, 입장권 수표의 관리는 공연장 운영자가 각각 책임지고 전담한다.

입장권 매표란 입장권의 판매 및 전산등록, 발권, 정산과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말하며, 이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사용자는 입장권 판매대행사와 사이에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사용자가 관객에게 판매한 입장권의 환불 등의 문제는 공연장 대관계약의 당사자 간 문제가 아니므로 표준계약서에서는 제외하였다.

입장권 수표란 공연 당일 공연장에서의 매표소 운영(관객들에게 지류의 입장권으로의 교환 등 사무), 관객들의 공연장 입장 관리 및 입장권 수령과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지칭한다.

선택

제15조(입장권 판매)

- ① 공연장 운영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공연장 운영자가 보유(지정)하는 입장권판매시스템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와의 사전 합의에 따라 입장권판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다.
- ② 공연장 운영자 또는 사용자가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에 따른 판매 방식, 시스템 연동,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장권 판매대행사와 별도 합의된 바에 따른다.

공연의 홍보 및 고객의 편의, 원활한 입장권 발권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장에 입점된 입장권 판매시스템이나 공연장 운영자가 지정하는 입장권판매시스템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필수적 규정이 아니며 당사자 간에 선택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사이에 공연장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입장권판매시스템 또는 공연장 운영자가 지정하는 입장권판매시스템을 사용하여 입장권을 판매하기로 합의한 경우,

공연장 회원 등에 한 공연 홍보, 공연장 회원에 대한 할인 혜택 등 공연을 위한 모객 활동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상호 협조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계약서 내용에 편입시킬 수 있다.

필수

제16조(공연의 취소 또는 중지)

- ①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사용자는 우선 사용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등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절차를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2. 행정청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지침 등으로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운영 중단이나 폐쇄 등을 명한 경우
 3. 공연장 운영자 및 사용자와 관계없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4. 공연장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 공연장 관리 책임 소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사유 외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
- ② 제1항의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 또는 중지시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사이의 대관료 반환 등에 관하여는 그 사유별로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공연의 취소 또는 중지란, 공연장 대관계약의 취소, 해제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공연이 특정 사유에 의해 일부 또는 전부의 상연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제1항은 공연의 취소 또는 중지의 경우 관객과의 관계에서 입장권의 교환 및 환불 등의 책임을 정하였다. 공연의 취소 또는 중지때 따른 손해 부담의 문제는 아래 제2항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이는 변론으로 하고, 불가항력, 행정청청이 중단 등을 명한 경우, 공연장 운영자 및 사용자와 관계없는 제3자의 유책 사유등으로 인한 공연의 취소 또는 중지의 경우 관객들에 대한 입장권 교환 및 환불절차는 사용자가 우선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제2항에서는 공연의 취소 또는 중지의 경우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 위험 내지 손해 부담의 분배 문제에 관하여 제18조의 대관료 반환 등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르도록 하였다.

당사자 간 합의하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공연이 취소, 중지 되는 경우 그 처리를 반드시 금전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체적 해결 방식을 따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공연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다른 기간에 다른 방식으로 공연 상연의 기회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미리 정해 둘 수도 있다.

필수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 ① 공연장 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위반사항 시정 또는 계약이행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러한 서면 통보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시점으로부터 [*]일이 경과하여도 시정 또는 계약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대관 승인 후 사용자의 대관 신청 시 기재 사실 중 중요 부분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2. 사용자가 본 계약에 정한 공연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한 경우
 - 3. 기타 사용자가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한 경우
-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연장 운영자에게 위반 사항 시정 또는 계약이행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러한 서면 통보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시점으로부터 [*]일이 경과하여도 시정 또는 계약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공연장 운영자가 본 계약에 정한 공연장 개방의무 및 사용자가 공연을 상연하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공연이 불가능한 경우
 - 2. 기타 공연장 운영자가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권은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모두 계약에서 정한 사유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 심히 부당하게 될 때에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공연장 운영자는 사용자에 대한 신뢰관계 상실, 사용자의 파산 등의 경제상 이유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약정 해제·해지권이 있음을 규정하였고, 사용자는 공연장의 객관적 상태가 공연을 올리기 어려울 만큼의 상황인 경우에 약정 해제·해지권이 있음을 규정하였다.

이는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해제·해지권(약정 해제·해지권)을 정한 것인바, 본 계약 조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유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에 해당한다면 당사자는 법률상 해제권에 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민법 제544조에 따른 최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필수

제18조(대관료의 반환 등)

사용자가 공연장 운영자에게 이미 지급한 대관료는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자는 그 정한 바에 따라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행정청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지침 등으로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운영 중단이나 폐쇄 등을 명한 경우
3. 행정청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지침 등으로 거리두기 제한 등을 두어 공연장의 객석 일부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공연장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 공연장 관리 책임 소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연준비대관일로부터 [*]일 전에 본 계약을 상호 합의해제한 경우
6.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5호의 기준일 이후에 본 계약을 상호 합의해제한 경우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하되, 위 각호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 대관 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반환 요율은 상이할 것인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규정은 특히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연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에 사용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신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본 규정을 참고하여 양 당사자가 개별 약정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 요율 등은 본 표준계약서에 담지 않았다.

제1호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제2호는 제1호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행정청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지침 등으로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운영 중단이나 폐쇄 등을 명한 경우이고, 제3호도 제1호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행정청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지침 등으로 공연장의 객석 일부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이다. 정부 지침으로 인한 거리두기 공연도 공연장의 객석 중 일부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인바,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사전에 대관료 반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4호는 공연장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 공연장 관리 책임 소홀 등으로 대관이 불가능해진 경우이다.

제5호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이나, 대관 일정이 임박하기 전에 공연장 운영자와 합의하여 공연장 대관계약을 해제(일부 또는 전부 해제)한 경우를 정하였다.

제6호에서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이면서 대관 일정에 임박하여 공연장 운영자와 합의하여 공연장 대관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를 정하였다. 대관 일정이 임박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인바, 공연장 운영자가 새로운 사용자를 찾는 것이 제5호의 경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므로, 그 반환 요율은 제5호의 경우보다 더 낮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필수

제19조(손해배상)

- ① 공연장 운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에 정한 대관료 지급 및 대관료 반환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고의·과실에 의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즉 채무불이행의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1항은 이 법정 손해배상청구권을 기재한 확인적 규정으로서 본 규정이 없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본 조항에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사유를 정해둘 수 있고, 이는 “약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면 당사자는 해당 사유가 ‘법률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 없이도 계약서상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나아가,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금액)을 예정할 수 있다. 즉 당사자가 이후 손해배상액수의 증명 책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사전에 계약 위반시 위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입증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양 당사자 간에 ‘위약금’을 약정해 두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98조 제4항).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1항 및 제2항).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위반시 위와 같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 가능한 금액으로 ‘위약벌’을 정하여 놓기도 한다. 당사자 간 ‘위약벌’의 약정을 한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더하여 ‘위약벌’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위약벌로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리 감액이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 취급이다. 다만 위약벌이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과다하게 약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 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로 되는 사례가 있다.

제2항에서는 대관료의 지급 및 반환의 규정은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

제20조(계약의 변경)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는 본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대관 계약의 변경은 계약의 양 당사자인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고, 공연장 운영자나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선택

제21조(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수

제22조(분쟁해결 등)

-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중 _____ 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_____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항에서는 본 계약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제2항에서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결방법을 미리 중재 또는 소송으로 정할 수 있음을 밝혀두었다.

당사자 간 제1호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³⁾’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이는 ‘중재합의’에 해당하며,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3)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변호사, 교수, 기업가 등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인단을 두고 있다.

경우, 상대방은 1차 변론기일 전까지 본안전 항변을 통하여 중재 합의가 있음을 주장·입증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소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

당사자 간 제2호에 따라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정한 경우, 당사자 간에는 합의를 통해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조). 다만, 전속적 합의관할을 정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민사소송법 제30조).

필수

제23조(본 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시부터 발생한다.
- ② 본 계약은 공연장 운영자의 내부 규약에 우선한다.
- ③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 ④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공연장 대관계약으로 정해야 할 대부분의 사항을 공연장 운영자의 내부 규약으로 정하고 있었고, 공연장의 내부 규약은 공연장 대관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사용자들은 공연장 내부 규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공연장 대관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내부 규약의 존재로 인하여 계약의 중요 내용이나 사용자 자신의 의무 사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공연장 내부 규약은 약관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약관의 대한 내용 통제로서 제재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본 공연장대관 표준계약서에서는 공연장의 내부 규약으로 정하고 있던 중요 사항을 계약서의 조문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고,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이 공연장 내부 규약에 우선함을 밝혀두었다.

필수

제24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공연장 대관계약은 공연 및 공연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체결과 이행에 양 당사자의 상호 신뢰와 협조가 전제 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정한 일반적인 내용 이외에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의사해석을 위하여 양 당사자간의 합의된 내용을 유연하게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발행일	2022년 8월
발행인	문 영 호
발행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 12층
홈페이지	www.gokams.or.kr

※ 이 책에 실린 글의 저작권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복제, 변형, 송신을 금합니다.

